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Ⅰ. 제 출 자 : 이천시장

Ⅱ. 제출일자 : 2003년 1월 21일 제출, 2003년 1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회부

Ⅲ. 근거법령 : 행정자치부로부터 창전동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 (2002. 12 .26)

Ⅳ. 검토내용

1. 제안 이유

○ 창전동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규모가 비대함에 따라

○ 행정운영동인 창전동에서 증포동을 분리 신설하고 관할 구역을 조정함으로서 주민 편의와 원활한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며

○ 또한, 행정운영동의 증가에 따라 동장 정수 증가와 읍·면·동 소재지 변경 및 관고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임.

4. 주요 골자

○ 행정 운영동인 창전동을 창전동과 증포동으로 분리하여 증포동을 신설하고자 동장 정수를 증포동에 1명 증원하여, 관할 구역을 창전동은 법정동 인 창전동일원을 관할하고, 증포동은 안흥동, 갈산동, 증포동, 송정동일원을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며(안 본 조례 별표)

○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, 이천시시청및읍·면·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별표에 신설되는 증포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증포동 49-16번지로 규정하고, 또한, 관고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창전동 420-9번지에서 관고동 6-1번지로 변경하려는 것임.(안 부칙 제2항)

5. 검토 의견

○ 이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, 행정 운영동인 창전동을 창전동과 증포동으로 분동 함에 따른 동장 정수 1명 증원과 관할 구역을 조정하며, 또한, 증포동의 소재지와 관고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여, 이천시시청및읍·면·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별표에 소재지를 규정 및 변경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